



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근로시간 제한 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



발표자: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하상욱 의원

현 사회의 문제점



취업 후 수습기간?

고등학교 3년

대학 4년

취업준비 2년



취업 인파

(서울=연합뉴스) 이지는 기자 = 15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KB금융 주최로 열린 '2013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'가 취업준비생들로 북적이고 있다. 2013.4.15 jjeunlee@yna.co.kr

마이스터고등학교의 추진방향



유명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
예비 마이스터(기술 명장)을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

실제 근무현장에서 쓰이는 기능을
수업시간에 배움



취업
9년→3년으로 단축!!
졸업후 취업!!



현 근로기준법의 문제점

근로기준법 제 52조 1항

① 사용자는 취업규칙(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,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

1. 대상 근로자의 범위(15세 이상 **18세 미만**의 근로자는 제외한다)

학생들의 보호?

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상실!!

1. 대부분의 생산직은 **교대 근무**가 필수
-> 18세가 되지 못해 교대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채용X
2.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취업 준비기간은 **3학년 1학기!!**
-> 생일이 2학기에 있을 경우 18세 미만!!!

해결 방안

근로기준법 제 52조 1항 (현행)

① 사용자는 취업규칙(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,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.

1. 대상 근로자의 범위(15세 이상 **18세 미만**의 근로자는 제외한다)

근로기준법 제 52조 1항 (개정)

① 사용자는 취업규칙(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,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.

1. 대상 근로자의 범위(15세 이상 **18세 미만(단,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생은 제외)**의 근로자는 제외한다)

기대 효과

1. 학생들이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.

2. 채용 기회가 적었던 빠른 96년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.

3. 기업의 입장에서보다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.

4. 꿈꿨던 기업을 가지 못했던 억울한 사례가 사라진다.